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 3. 5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3년 2월 15일
- 나. 발 의 자 : 김길자 의원 외 4명
- 다. 회부일자 : 2013년 2월 21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73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(2013년 2월 28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김길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따른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.
- 2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
- 3)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
- 4) 종합복지서비스 제공, 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, 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5)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.

6) 교육 및 홍보,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정옥)

가. 본 제정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생활 등에 필요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나. 주요내용을 보면

-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
-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
- 종합복지서비스 제공, 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, 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, 교육 및 홍보 실시,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다. 발달장애인은 아동기에 나타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일생동안 자립하기가 힘들고 본인 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부담이 큰 장애 유형으로서, 지적인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 또한 어려워 이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 등 피해가 발생하여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·사회적 배려나 보호체계는 충분하지 못하였음.

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10 ~ 11월 「발달장애인 실태 조사」를 실시하였으며, 실태 조사를 근거로 2012년 7월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화된 종합지원계획인 「발달장애인 지원 계획」을 수립·발표하였음.

우리구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과학교 운영, 일자리 제공과 동 주민센터의 발달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을 위한 관련 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

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길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2월 15일

발 의 자 : 김길자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.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- 다.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라. 종합복지서비스 제공, 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, 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8조)
- 마.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.(안 제9조)
- 바. 교육 및 홍보,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0조, 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
나. 합 의 : 사회복지과, 총무과, 기획예산과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3. 2. 8 ~ 2. 13) 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발달장애인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종합복지서비스”란 국가 및 서울시와 구,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·재활·교육·직업훈련·고용·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(이하 ” 복지단체 “라 한다)”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,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

-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

2.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 3.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 4.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 5.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
 6.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·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
 7.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8.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)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,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7조(복지단체의 보호·육성)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·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복지시설 확충 등)

-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,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을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· 교육기관 · 복지시설 ·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 · 홍보)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, 유선방송, 구 홈페이지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예산의 지원)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